

교원인사 규정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1.11.29.		16		
2	2012.10.31.		17		
3	2013.7.26.		18		
4	2013.12.23.		19		
5	2015.2.3.		20		
6	2016.1.12		21		
7	2016.10.28		22		
8	2017. 3. 1		23		
9	2017. 11. 2		24		
10	2018. 3 1		25		
11	2018.10.22		26		
12	2019.8.26		27		
13	2019.12.27		28		
14	2021.4.26		29		
15	2023.5.8		30		

교원인사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의 임용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교원의 종류 등)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강사,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9.8.26>

② 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 14조에서 강사를 제외한 교원으로,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구분한다.<개정 2015.2.3.,2019.8.26>

③ 정년트랙교원이라 함은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으로서의 임용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교원을 말하며, 정년트랙교원 중 학내 실용학문 진작과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.<개정 2015.2.3.>

④ 비정년트랙교원이라 함은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으로서의 임용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교원을 말하며,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와 교육중점교수, 연구중점교수로 구분한다. 단, 비정년트랙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.<개정 2017.11.2>

⑤ 삭제 <2016.10.28>

⑥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한다.<개정 2012.10.31.>

⑦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자로 한다. <개정 2019.8.26>

⑧ 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규정된 자로서 명예교수, 초빙교수, 겸임교원 등으로 한다. <신설 2019.8.26>

제3조 (적용) ①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에게만 적용한다. <개정 2011.11.29., 2015.2.3.>

② 본 규정의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임용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<개정 2011.11.29., 2015.2.3., 2019.8.26>

제4조 (소속) ① 전임교원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각 학과, 학부에 소속되어야 한다.

<개정 2019.8.26>

②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임교원을 교내 기관에 소속하게 할 수 있다.

<개정 2019.8.26.>

③ 총장은 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다른 학과, 학부에 겸하여 소속하게 할 수 있다.

<신설 2021.4.26.>

제5조 (세칙) 총장은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.

제 2 장 임 용

제 1 절 신규임용

제6조 (임면) ① 전임교원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(이하 정관이라 한다.)제41조에 의거 임면하며, 동조 제3항에 의거 계약으로 임용한다.<개정 2013.12.23.,2019.8.26>

② 임용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7조 (임용자격) ①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은 본 규정 제15조에서 정한 경력 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원인사 위원회에서 교육자적 자질과 학문연구 업적 등을 심의하여, 본교 전임교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임용한다.<개정 2012.10.31. 2015.2.3.,2019.8.26>

1. 박사학위 소지자(명예박사학위 제외)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 시 본 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연구·교육 년 수에 준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
2. 해당 분야의 연구 및 교육 실적이 월등하여 제1호에 상응한다고 인정된 자

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다.

1.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 사유
2. 건강 상태가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
3. 임용 후에도 본교 이외의 다른 직장에 전임으로 재직하고자 하는 자

③ 특별 채용되는 전임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교원 특별 채용 내규에 따른다.

<개정 2019.8.26>

제8조 (임용시기) 전임교원의 임용은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임용한다. 단,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.<개정 2019.8.26>

제9조 (공개채용의 원칙)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국내외의 석학, 종견학자, 기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19.8.26>

제10조 (임용계획, 심사 절차 및 계약체결)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계획 및 심사절차, 특별 채용 절차는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<개정 2019.8.26>

② 총장은 임용일자, 직위, 계약기간, 보수, 근무 등 계약조건을 명시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다.<개정 2015.2.3.>

제11조 (임용기간) ①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을 기한부로 계약 임용하되, 계속 임용 시에는 본 규정 제17조에 정한 기간에 따라 재계약 임용(이하 재임용이라 한다.)한다. <개정 2009.2.2., 2012.10.31., 2015.2.3., 2017.3.1.,2019.8.26>

②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은 최초 계약임용 기간 내에는 승진, 승호봉 또는 승급할 수 없다.<개정 2009.2.2., 2012.10.31.,2017.3.1.,2019.8.26>

③ 특별 채용되는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교원특별채용내규에 따른다.<개정.,2019.8.26>

④ <삭제 2015.2.3.>

⑤ <삭제 2011.10.28.>

제12조 (임용직위의 기준) 신규임용된 전임교원 임용직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<개정 2015.2.3.,2019.8.26>

1. 부교수<개정 2018.3.1>

다음 각 목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총장이 인정한 자

가. 정규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자

나.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·연구 경력이 9년 이상 되는 자

다. 국내외 주요항공사 비행경력 15년 이상으로 기장 경력이 있는 자

<신설 2019.12.27.>

2. 조교수<개정 2012.10.31 >

부교수 직위부여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

3. <삭제 2012.10.31>

4.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의 직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 직전 전적대학에서의 현 직위만 인정한다. <개정 2019.8.26>

5. 특별채용 및 비정년트랙교원의 경우 직위부여는 상기 각 호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1>

6. <삭제 2018.3.1>

제13조 (경력 년 수의 계산) 전임교원의 경력 년 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<개정 2019.8.26>

1.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은 통산할 수 있다.

2. 동일한 기간 중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은 그 하나만을 인정한다.

3. 임용 경력 년 수를 환산함에 있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연구 기간은 3년, 석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연구기간은 2년까지 이를 인정하며,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기간과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.

4. 그 밖의 연구 및 교육경력은 본 대학 교원 경력 환산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.

<개정 2019.8.26>

제14조 (제출서류)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제출서류는 세척으로 따로 정한다.<개정 2019.8.26>

②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5조 (임용경력 년 수)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 및 교육 년 수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.

<개정 2012.10.31.,2019.8.26>

1. <삭제 2012.10.31>
2. 조 교 수 : 5년
3. 부 교 수 : 11년
4. 교 수 : 16년

제 2 절 재임용, 승진, 승호봉 및 승급

제16조 (재임용, 승진, 승호봉 및 승급의 정의) ① 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동일직위로 계속 재계약 임용하는 것을 재임용이라 한다.

② 현 직위에서 최소승진소요년수가 도래되어 상위 직위로 계약 임용되는 것을 승진이 라 하며, 최소조기승진년수가 도래되어 상위 직위로 조기 계약 임용되는 것을 조기 승진이라 한다. <개정 2009.2.2., 2015.2.3.>

③ 호봉이 상위 호봉으로 변경되는 것을 승호봉이라 한다.

④ 동일 직위 내에서 상위 직급으로 변경되는 것을 승급이라 한다.<신설 2017.3.1>

제17조 (재임용 및 승진) ① 재임용 및 승진은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임용한다.<개정 2015.2.3>

② 신규임용된 전임 교원의 최초 계약임용 만료에 따른 재임용년수는 부교수 3년, 조교수 4 년으로 한다. 단, 신규임용 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인정받 은 조교수의 재임용년수는 2년으로 한다.<신설 2015.2.3.,2019.8.26>

③ 승진직위별 최소승진소요년수, 최소조기승진소요년수, 임용년수는 다음과 같다. 단, 정교수 승진 시에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, 신규임용 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 력을 인정받은 조교수의 최소승진소요년수 및 최소조기승진소요년수는 각각 2년을 감하여 4년 또는 3년으로 정한다.<신설 2015.2.3.>

승진직위	최소승진 소요년수	최소조기승진 소요년수	임용년수
정교수	5년	4년	정년
부교수	6년	5년	5년

④ 승진 임용이 되지 않은 경우, 재임용년수는 부교수 3년, 조교수 2년으로 한다. 단,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승진에 필요한 정량기준을 미충족했을 경우, 재임용년수는 부교수 3년, 조교수 2년으로 하고, 해당 기간 내 승진에 필요한 정량기준을 미충족할 경우(승진하지 못한 해당 기간만큼의 교육, 연구, 봉사 영역별 연간 점수 및 교육 의무점수를 추가달성해야 하며, 연구 의무점수는 추가달성의 의무가 없음) 재임용하지 않는다. <신설 2015.2.3, 본항 전문개정 2023. 5. 8>

⑤ 승진 임용이 되지 않은 전임교원은 6개월 단위로 승진을 재상신할 수 있다. <개정

2013.7.26., 2015.2.3., 2017.11.2.,2019.8.26., 2019.12.27>

- ⑥ 재임용 및 승진 대상자에 대한 실적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,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, 정성평가심사내규에 따른다.<개정 2016. 1. 12.>
- ⑦ 재임용 및 승진 대상자의 제출서류, 심사절차는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<개정 2016. 1. 12.>
- ⑧ <삭제 2016. 1.12 >
- ⑨ 재임용 기간 내에 정년이 될 경우에는 정년이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까지 재임용 한다.
- ⑩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.
- ⑪ 정년까지 임용되는 전임교원의 정수는 전체 재직교원의 100분의 70이내의 수로 하되, 당해 전임교원 총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할 수 있다.
- ⑫ <삭제 2016. 1.12 >
- ⑬ <삭제 2016. 1.12 >
- ⑭ <삭제 2016. 1.12 >
- ⑮ 비정년트랙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<개정 2015.2.3., 2023.5.8>

제18조 (승진, 승호봉 및 승급의 제한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진, 승호봉 및 승급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3.7.26.,2017.3.1>

- 1. 징계의결요구, 징계처분, 직위해제, 휴직 또는 최초 계약임용 중에 있는 경우
- 2. 다음 각 목의 징계처분별로 징계가 확정 통보된 시점으로부터 승진, 승호봉 및 승급소요기간에 다음의 기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<개정 2013.7.26.,2017.3.1>

- 가. 정직 : 18월
- 나. 감봉 : 12월
- 다. 견책 : 6월

② 본 규정 제 47조의 2(경고)에 따라 경고를 받고,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진, 승호봉 및 승급이 제한될 수 있다. <신설 2019.8.26>

제19조 (승호봉 및 직급별 소요기간) ① 전임교원은 13호봉까지는 매1년마다 승호봉 되며, 12호봉부터는 매2년마다 승호봉됨을 원칙으로 하되, 승호봉 여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. 단, 비정년트랙교원은 승호봉을 적용하지 않는다.

<전문개정 2017.3.1.> <개정 2019.8.26>

- ② 전임교원의 직급별 소요기간은 <별표 1>에 따른다.
<전문개정 2017.3.1> <개정 2019.8.26>

제 3 절 교원업적 평가

- 제20조** (교원업적평가) ① 전임교원은 교원업적평가를 받아야 하며, 교원업적평가의 시행시기, 적용시기 및 평가방법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9.8.26>
- ② 전임교원의 임용심사 시에는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한다.<개정 2019.8.26>
- ③ <삭제 2009.2.2>

제 3 장 교원인사 관련 위원회의 운영<개정 2015. 2.3.>

- 제21조** (교원인사 관련 위원회의 설치) ① 전임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에 관한 심의를 위해 교원임용추천 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5.2.3., 2016. 1. 12.,2019.8.26>
- ② <삭제 2016. 1. 12.>
- ③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관 제5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인사위원회(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)를 두며,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 제 22조 내지 제28조로 정한다. <개정 2013.12.23. 2015.2.3.>

- 제22조** (인사위원회의 기능)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규칙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3.7.26.>
1. 총장이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<개정 2012.10.31>
 2. 총장이 부총장, 학장, 대학원장 및 교무위원 등의 보직 제청을 하고자 할 때의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<개정 2013.12.23.>
 3. 강사 및 비전임교원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<신설 2013.7.26.><개정 2019.8.26>
 4. 교원업적평가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<신설 2013. 7. 26.>
 5. 교원징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<신설 2013.7.26.>
 6.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개정 2013.7.26.>
 7.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<신설 2013.12.23.>
 8. 전임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에 따른 재심에 관한 심의 <신설 2019.8.26>
 9. 강사의 재임용에 따른 재심에 관한 심의 <신설 2019.8.26>
- ② 인사위원회는 전항 제1호에 의한 임면 동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의거 심의 하여야 한다.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
 2. 학생의 교수,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 3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- ③<삭제 2019.8.26>

제22조의 2 (심의사항 통보)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모든 징계관련 심의결과는 법인사무국으로 통보한다.[조문 신설 2013.7.26.]

제23조 (인사위원회 구성) ① 인사위원회 구성은 본 대학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3.7.26., 2013.12.23.>

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.

제24조 (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)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,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5조 (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등)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6조 (회의록 작성)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서명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, 날인하여야 한다.

제27조 (인사위원회의 간사 등)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28조 (운영세칙)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 4 장 복 무

제29조 (교원의 책임강의시간) ① 정년트랙 교원의 책임강의시간(이하 ‘책임시간’이라고 한다.)은 학칙 제6조에 따른 학기별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(년 간 학부강의 12시간 포함)에 해당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책임시간은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09.2.2., 2013.12.23., 2015.2.3., 2018.3.1., 2018.10.22., 2019.8.26>

② 책임시간은 보직수행 등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, 『강의료지급규정』에 명시된 책임강의시간 및 학부 책임강의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2.2.,2013.12.23.,2015.2.3.,2018.3.1.,2019.8.26.>

③ <삭제 2015.2.3.>

④ <삭제 2018.10.22.>

⑤ 학부(과)별 교과과정 운영에 따라 책임시간은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기별 주당 3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<신설 2018.10.22>

1. 학부(과)별 교과과정 및 학기별 개설과목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
2. 연구년, 퇴직 등으로 학년도 내에 책임시간을 보완할 수 없을 경우 조정할 수 없음

⑥ 책임시간 미충족이 발생한 경우 2개 학년도 이내에 반드시 보충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8.26.>

제30조 (출장, 파견 및 연수) ① 국내 또는 해외 연구 등을 위한 출장, 파견 및 연수를 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출장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8.26>

② 전임교원의 출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출장, 파견 및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<개정 2019.8.26>

제31조 (연구년) ①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를 높여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연구년제를 시행한다. 단, 비정년트랙교원에 대해서는 연구년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.<개정 2015.2.3.,2019.8.26>

② 교원연구년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원연구년제 규정에 의한다.

제32조 (복귀) 전임교원은 연구년, 출장, 파견 및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복귀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9.8.26>

제33조 (겸직) ① 전임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교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. <개정 2019.8.26>

② 대학의 교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5 장 신분보장

제34조 (정년) 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.

<개정 2019.8.26>

제35조 (휴직의 적용대상) 본 규정 제 36조 내지 제 38조 및 제 41조 내지 제 42조의 휴직

관련 사항은 전임교원에 적용한다. <개정 2013.12.23.,2019.8.26>

제36조 (휴직의 사유 및 기간) 휴직의 사유 및 기간은 정관 제 45조 내지 제46조를 따른다.<개정 2013.12.23.,2019.8.26>

<개정 2013.12.23.,2019.8.26>

제37조 (휴직교원의 신분 및 복직) 휴직 교원의 신분 및 복직은 정관 제47조를 따른다.<개정

2013.12.23.>

제38조 (휴직교원의 처우) 휴직교원의 처우는 정관 제48조를 따른다.<개정 2013.12.23.>

제39조 (복직) <삭제 2013.12.23.>

제40조 (직위해제) 전임교원의 직위해제는 정관 제49조를 따른다.<개정 2013.12.23.,2019.8.26>

제40조의 2 (면직의 사유) 전임교원의 면직사유는 정관 제49조의 2를 따른다.

[조문 신설 2013.12.23.]<개정 2019.8.26>

제41조 (의사에 반한 휴직, 면직 등의 금지) 정관 제51조에 따라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 또는 면직 등의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3.12.23.>

제42조 (휴직의 절차) 교원의 휴직은 학부(과)장, 학장,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제청한다.<개정 2016. 1. 12.>

제43조 (명예퇴직) ① 임면권자는 정년트랙 교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인 날에 자진하여 퇴직을 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.<개정 2009.2.2., 2013.12.23. 2015.2.3.>

②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52조를 따른다.<개정 2013.12.23.>

제 6 장 보수, 특별 성과 및 징계<개정 2015.2.3.>

제44조 (보수) 전임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, 교원성과연봉제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한다. <개정 2015.2.3., 2017.3.1.,2019.8.26>

제45조 (포상)① 본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는 전임교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<개정 2019.8.26>

② 전임교원의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특별성과지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<개정 2019.8.26>

제46조 (특별성과 지원) ① 전임교원의 교육, 연구 및 봉사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성과를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09.2.2.,2019.8.26>

②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특별성과지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<개정 2009.2.2.>

제47조 (징계) ① 총장은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.<개정2019.8.26>

1.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
2.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공문서 및 사문서의 위조·변조, 기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3. 성희롱·성폭력, 기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② 전임교원의 징계는 정관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를 따른다.

[조문 개정 2013. 7. 26] <개정2019.8.26>

제47조의 2(경고) ①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이 서면 경고할 수 있다.

1. 징계사안이 경미하여 견책미만의 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때
2. 업무 수행 상 보직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·감독을 게을리 한 때
3. 원활한 업무수행 또는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 및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때

② 경고의 효력기간은 2년으로 하며, 경고 효력기간 내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교원

에 대하여는 제47조에 의거 징계 제정한다.

[조문 신설 2013. 7. 26.]

부 칙

1.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현재 재임 중에 있는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기간 계산은 당초 임용일자로부터 계산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 심사적용 경과규정) 1998. 3. 1일자 교수직위 기간제 임용 자 및 1998. 4. 1일자 교수직위 승진 자는 교원정년보장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폐지) 이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정년보장임용심사 규정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0.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되, 제12조(임용직위)는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(규정폐지) 이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.
1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하되, 제16조제2항의 조기승진제도는 2009년 9월 1일 이후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1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13.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되,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(경과폐지)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전임강사 경력은 조교수 경력으로 인정한다.
1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15.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수업일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) 제29조제1항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16.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개정 규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.

1.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, 재임용, 승진, 승호봉 된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 2. 2015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한 임용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17.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개정 규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.
1. 2016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, 재임용, 승진된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 2. 2016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한 임용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1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1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0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2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2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2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<신설 2017.3.1>

직급별 소요기간

직위	직급	2017.2.28. 이전 임용교원	2017.03.01. 이후 신규임용교원
교수	P1	교수 1~3호봉	퇴직시까지
	P2	교수 4~6호봉	7년
	P3	교수 7~10호봉	7년